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가단5085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8,248,523원 및 그중 47,624,635원에 대하여 2021. 10. 20.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 2022. 1. 1.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21. 8.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7. 9. 접수 제1469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1. 8. 24. 접수 제1830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피고 A는 2020. 8.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는 피고 B에게 2021.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를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2021. 7. 9. 500만 원을, 2021. 7. 14. 2,000만 원을, 2021. 8. 14. 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A는 피고 B에게 2021.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를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2021. 8. 30.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3) C 주식회사는 2021. 7. 27. 청구금액을 16,346,783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4) 피고 A는 2021. 8. 18.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의하면 피고 A의 채무액은 합계 411,265,954원이었다.

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당시의 시가는 3억 200만 원 내지 3억 4,000만 원이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또한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2021. 6.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10. 20. 신용보증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1) 피고 A는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 또는 그의 아들인 D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이라며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10 판결), 위 인정 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4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온 관계인 점, 피고 A는 아들인 D가 운영하던 'E'를 폐업하고 새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과 기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의 대여를 요청하였던 점, 피고 B은 돈을 대여하기 전에 피고 A 또는 D에게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피고 B은 2022. 7. 1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A가 빚이 많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특히 이 사건 1 근저당권 설정 직후에는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도 한 점,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이 실제로 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제3층 호 84.92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화성군 대 22073㎡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2073분의 41.215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2. 구상금 청구

가.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와 ㉠ 2020. 7. 30.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F,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5. 7. 30.로 된 신용보증서, ㉡ 2020. 12. 1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G, 보증금액 27,500,000원, 보증기한 2021. 12. 14.로 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해 주어, 피고 A가 소외 H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하였습니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그런데 피고 A는 소의 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2021. 10. 20. 소의 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48,029,695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에 405,0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47,624,635원입니다.

(2) 지연손해금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 2022. 1. 1.부터는 연 8%입니다.

(3) 확정손해금

위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405,060원을 회수함으로써 110원의 확정손해금채권[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위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산근기※

$$363,620원 \times 10\% \times 1(2021.10.20.-2021.10.20.)/365 = 99원$$

$$41,440원 \times 10\% \times 1(2021.10.20.-2021.10.20.)/365 = 11원$$

(4) 가지급금(채당금)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채당가지급한 법직절차비용 중 잔액은 623,778원입니다.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48,248,523원[대위변제 잔액 47,624,635원 + 확정손해금 110원 + 가지급금 623,778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47,624,635원에 대하여 2021. 10. 20.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 2022.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을 들면서 피고 A는 신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자금을 융통받았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추가로 하였으나, 이 사안은 위 판결의 사안과 다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